

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
번호 83

제출년월일 : '99. 6. 18.
제출자 : 서초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규정등이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 “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” 부분의 “품행이 극히 불량하고”는 장학금이 주대상자가 지도자의 공로이고 자녀의 성적, 품행과는 별개이므로 삭제 (안 제9조제1항제2호)
- 나. 장학생의 의무조항은 선언적 조항으로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삭제 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의 : '99년도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 3차심의의 결사항
- 라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.

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중 “품행이 극히 불량하고”를 삭제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 (지급 및 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 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80/100이 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. ~ 4. (생략) ② (생략) 	<p>제9조 (지급 및 정지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장학생의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80/100이 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 (장학생의 의무)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,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</p>	<p>< 삭제 ></p>